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서

2021. 5.

예수대학교

Ⅰ 개 요

1. 목적

예수대학교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 시 절차, 범위, 내용 등에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여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준수하기 위함

2. 적용 대상

- 예수대학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 시 적용함
-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는 본 절차서를 해당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적용하거나 준용할 수 있음

3. 법적 근거

- ㅇ「개인정보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o「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 ㅇ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7.26 시행)

4. 용어 정의

- 제3자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적대리인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 한 모든 자를 의미함(수탁자는 제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저장매체(USB 메모리, CD 등)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

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기관·단체·법인 포함)가 정보주체에 고지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기준

1.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의 법률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에 근거, 원칙적으로는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을 금지한다.
- 기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함 (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제외)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금지 예외사유)			
1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u>호</u>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5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호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만	
7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됨		
8ই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호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의 적정성 검토

- 가. 요청 기관의 적격 여부 확인
- 요청 기관의 개별법에 자료요청의 근거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경우 제공 가능
- 오 요청 기관의 개별법에 자료요청 근거법이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예외적 제공가능 사항 확인

나. 제공항목 판단

- ㅇ 예수대학교가 수집한 정보여부 확인
 - 예수대학교가 직접 수집한 정보가 아닌 경우 자료제공 불가(단,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공 가능)
- ㅇ 요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 항목만 제공(개인정보 최소 제공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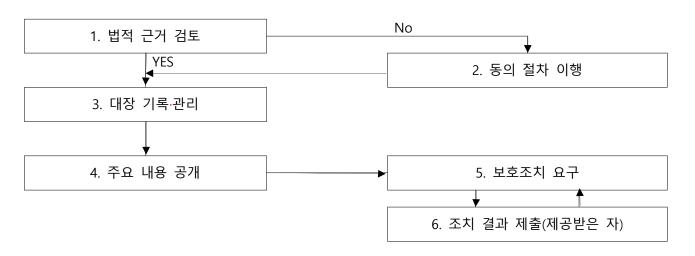
3.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방법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동의는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18조제3항)
-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및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아래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함

구분	목적 외 이용 시	제3자 제공시
동의 내용	1.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2.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 이용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Ⅲ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업무절차

ㅇ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절차도



절 차	담 당	주 요 내 용
1. 법적근거 검토	개인정보 처리자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 하는지 법적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 2호 ~ 9호) 검토
2. 동의절차 이행	개인정보 처리자	-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서는 [붙임1] 참조
3. 대장 기록·관리	개인정보 처리자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기록 후에는 해당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함 ※ 대장은 [붙임2] 참조
4. 주요 내용 공개	개인정보 처리자	-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제공한 날짜, 법적 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 명시 ※ 공고문은 [붙임3] 참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 1호와, 7호는 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5. 보호조치 요구	개인정보 처리자	- 제3자 제공시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6. 조치결과 제출	개인정보 제공 요청자	- 안전성 확보조치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 취급자(담당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Ⅳ 목적 외 이용 ㆍ 제3자 제공 방법 및 제한

1.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방법

- O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결재에 의한 문서 회신을 원칙으로하고, 회신 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함.
 -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의 제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 ㅇ 요청 기관의 직원이 본교에 직접 방문하여 제공받는 경우
 - 제공하는 개인정보 자료는 반드시 암호화 조치
 - 보조기억매체(광디스크, USB 등)를 통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처리하고, 요청 기관에서 제공 자료를 확인한 후에는 즉시 회수하여 저장된 개인정보는 삭제 처리
- 이. 기타의 방법에 의해 자료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제공

2.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 ㅇ 개인정보의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 제공 가능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제공 제한

○ 정보주체로부터 기관이 수집한 정보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고 직접 수집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공 불가
 - ※ 단, 정보주체로부터의 별도의 동의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공 가능
- 타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경우 업무범위 외 자료 제공 불가
- O 요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 항목만 제공(법 제3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 자료 제공의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항목만을 제공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함
- 개인정보 요청자의 정보 요구가 과도한 경우 검토를 통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요구는 제외하여 제공

∨ 안전성 확보조치 및 기록 관리 방안

1.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

- **보호조치 방안** (법 제18조제5항, 지침 제9조)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를 제한하거나 이용 목적 달성 후 폐기 및 사후관리 실태 확인 등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요청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2.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기록·관리 방안

- ㅇ 관리방법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ㅇ 필수 기록사항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기록사항 >─

-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성명, 연락처)
- 3. 이용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6. 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주기 또는 기간
- 7. 이용 또는 제공하는 형태
- 8.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용을 제한을 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3.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사실의 공개

구분	내용	법률근거	
공개 방법	-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 (홈페이지에 게재 시 10일 이상 계속 게재)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2호~6호, 제8호, 제9호	
공개 시 필수항목	- 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문 :[붙임3]참조	
공개 예외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1호, 제7호에 해당 되는 경우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아도 됨	

※ 벌칙 규정

위 반 행 위	벌 칙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를 제공받은 자(제18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위반)	(제71조 제2호)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제18조 제3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영도구체에 대한 고시의구 위한(제16도 제3명 위한)	(제75조 제2항 제1호)	

Ⅵ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1.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조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가능
-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사용될 수 있는 정보 포함 불가

2.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o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

- 붙 임 1. 개인정보파일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2. 개인정보파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1부.
 - 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문 1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예수대학교에서 =	<u> </u>	[‡]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
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주체	에게 알리고 별도의 동	등의를 받고자 합	깤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제	공 동의를 거부	할 권리가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있으며, 동의 거부 /	٧	를 받을 수
또는 제한사항	없습니다.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	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	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변	•		나나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2호 ~ 9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공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1 1 7 1 3 1 0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진 • 이용) 제 17 3	5(개이정보의	제공)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
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의			
니다.	7 64 71662 1	6 × 90 ·	1001 0-16
- 1 - 1.			
	년	월	일
	Ľ	2	2
	+1 · · · - · ·	-17	/ = 1 \
	정보주체	기름 :	(인)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인 경	!우) 법정대리인 (이름 :	(인)

[붙임2]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기	소 속 상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기	성 명 · · · · · ·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m²]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____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관리부서 :
- 2. 개인정보파일명:
- 3. 공고기간 : 게재일로부터 10일 이상
- 4. 공고 장소 : 홈페이지
- 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일 :
- 6.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법적근거 :
- 7.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목적 :
- 8.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항목 :

. . . .

0 0 0